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관세·무역 NEWS

2. 올 상반기 수출액, 3,032억弗 기록...“코로나19 前 회복”

3. “중국 발행 C/O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이렇게 다릅니다”

4. “까다로운 화학물질 품목분류, 여기서 확인하세요”

5. 해외여행자, FTA 협정세율 적용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허용’

6.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해 정부·업계 ‘맞손’

7. “아프리카 빛장 연다” 정부, 케냐와 무역·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개정법령

8.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9. 약사법 일부 개정



민원사례

10. 미인도 물품의 신고 여부 관련 질의

11. 유·무상 물품의 수출신고 관련 질의



기타 관세소식

12. 탄소세 내라는 EU...‘철강·알루미늄’ 국내 기업 청구서는?

13.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 화물예약 데스크’서 中企 지원

Cover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통관·물류체계도 ‘개인 무역’ 중심으로 혁신할 것 - I

이주의 초점

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 열고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 논의

최근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간 거래에서 개인 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관·물류체계도 과감하게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무역구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물품의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에 행정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무역 NEWS

관세청은 7월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중기 운용계획을 논의했다.

개정 법령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임재현 관세청장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민원 사례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인 무역에 적합한 통관·물류체계 구축, ▲과세행정 수용도 및 편의성 확대, ▲무역구조 전환에 대응한 국민 안전망 구축,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전(全) 과정 지원 등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통관·물류체계도 '개인 무역' 중심으로 혁신할 것 - II

이주의
초점

구체적으로 먼저 현재 기업 간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해 개인 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및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해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무역
NEWS

또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한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해 통관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행정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개정
법령

이를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혀 수출입업체에 AEO 인증 획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
사례

또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행정에도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 편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관세 조사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한정됐던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관세행정 전(全)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통관·물류체계도 ‘개인 무역’ 중심으로 혁신할 것 - III

이주의
초점

셋째로, 무역구조 전환 시기를 맞아 위해물품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예방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 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며,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한다.

관세·무역
NEWS

또한 최근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 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 서비스로 우리 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全)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세무역 데이터를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하며,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하며,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 우리 관세행정 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추진한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무역 패러다임, ‘B2B → 개인 무역’으로 전환” 통관·물류체계도 ‘개인 무역’ 중심으로 혁신할 것 - IV

이주의
초점

이 외에도 RCEP 발효 등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협정 활용 정보 제공, 인증 수출자 제도 통합·간소화 등 FTA 활용 기반을 재설계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발전심의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관세·무역
NEWS

또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 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도 공감했으며,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올 상반기 수출액, 3,032억弗 기록...“코로나19 前 회복” - I

관세청, 전년 동기대비 26.1% 증가 ... 철강·의약품·반도체 등 선전

이주의
초점

올 상반기 수출액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증가한 3,0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이다. 기존 상반기 최대 수출액은 2018년 상반기의 2,967억 달러였다.

관세·무역
NEWS

관세청은 7월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수출 통계' 자료에서, 올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1% 증가한 총 3,03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 상반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2018년 상반기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참고로 하반기 최대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8년(하반기) 기록한 3,082억 달러가 최고다.

개정
법령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 V자 반등을 하며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개월(41.2%, 45.6%, 39.8%) 연속 약 40%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민원
사례

품목별로 보면, 철강·정밀기기·의약품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반도체·승용차·컴퓨터 주변기기는 역대 2위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올 상반기 수출액, 3,032억弗 기록...“코로나19 前 회복” - II

올 상반기엔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승용차가 각각 역대 2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주의
초점

반도체의 경우 對미국·대만·베트남 수출이 2018년 상반기(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기록)보다 늘었다.

국가별로는 對미국·EU·베트남 수출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관세·무역
NEWS

수출 1위국인 對중국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 상반기에 근접한 실적으로 역대 수출 2위를 기록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중국 발행 C/O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이렇게 다릅니다”

관세청,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 당부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번호 체계를 소개하며,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하라고 7월 8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해관이 발행하는 한·중 FTA C/O는 'K'로, APTA C/O는 'B'로 시작한다. 한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가 발행하는 한·중 FTA C/O는 '19'로, APTA C/O는 '01'로 시작한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

원산지증명서 종류	해관(Customs)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중 FTA	K + 년도 (2자리) + 일련번호	19 + 년도(2자리) + 일련번호
아·태 무역협정(APTA)	B + 년도 (2자리) + 일련번호	01 + 년도(2자리) + 일련번호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까다로운 화학물질 품목분류, 여기서 확인하세요”

분석소, 홈페이지 內 ‘유관기관 정보조회’ 기능 활용 당부

이주의
초점

화학물질은 용어와 품목분류 체계가 복잡해 관련 업무 진행 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소 홈페이지(www.customs.go.kr/cclss/main.do)의 ‘유관기관 정보조회’ 메뉴에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관기관 정보조회 → 분야별 주요 정보 → 화학·섬유·신발·전략물자·산업 → 화학물질 품목분류 조회(EU) or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조회’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각각의 매뉴얼도 마련했는데, ▲화학물질 품목분류 조회 매뉴얼에서는 ① 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를 이용한 조회법, ② 화학물질명을 이용한 조회법을 소개했다.

이 중 ‘CAS 번호를 이용한 조회법’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활용해 조회하고 싶은 화학물질의 CAS 번호를 확인한 후 EU 화학물질 품목분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하는 방식이다(예 : Sodium hydroxide → 1310-73-2).

아울러 ▲유해 화학물질 해당 여부 매뉴얼에서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출처 - CUSTRA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해외여행자, FTA 협정세율 적용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허용' - I

이주의
초점

인천세관, C/O 및 구매영수증 원본 제출 안 해도 'OK'
스마트폰 촬영 후 세관검사 전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7월 15일 밝혔다.

FTA 협정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하며,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 (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관검사 전까지 이메일로 전송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금액별 세부 기준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관세소식

【 원산지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방법 】

1단계	2단계	3단계												
원산지증명서(구매영수증) 사진 촬영	세관으로 이메일* 발송	입국 시 자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자, 작성자, 일자, 상품명, 가격, 서명이 명확히 보이게 촬영 - 내용 전체가 보이게 촬영 (부분 촬영 불가)* * 판독이 어렵거나 진위성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이 원본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 시 'customs21@korea.kr'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 시 't2customs@korea.kr' * 이메일 : 제목[FTA 신청서류(일시, 편명, 성명)], (첨부) 구매영수증 등 사진 파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세 관 신고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아래 질문의 해당 <input type="checkbox"/>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p> <table border="1"> <tr> <td>1. 해외국내의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첫면 1 참조) [총금액 : 약]</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p>- 2번 란의 '있음'에 체크</p> </div>	1. 해외국내의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첫면 1 참조) [총금액 : 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해외국내의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첫면 1 참조) [총금액 : 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EU, 영국, EFTA, 터키의 경우 구매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Cover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해 정부·업계 '맞손' - I

이주의
초점

국토부·공정위·5개 대기업집단 등 상생 협약식 진행

앞으로 대기업 계열 화주·물류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와 물류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이 도입된다.

관세·무역
NEWS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국내 화주·물류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이는 쉐 산업 평균 비중인 1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위해 정부·업계 '맞손' - II

이주의
초점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 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 표준 계약서'를 제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 개방 자율준수 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무역
NEWS

이어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
법령

또한 일감 개방 및 표준 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 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부와 공정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민원
사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아프리카 빗장 연다” 정부, 케냐와 무역·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I

이주의
초점

케냐 '경제발전 전략(Vision 2030)' 실현에도 협력할 것

정부가 동아프리카 거점국이자 교통·물류의 중심지인 케냐와 무역·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7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1 서울 커피 엑스포' 주빈으로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베티 마이나 케냐 산업통상기업개발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박 차관은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서 케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으로 케냐와의 소비재,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4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로, 2019년 5월 협정 발효 후 7월 7일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IMF는 역내 관세 90% 철폐 시 역내 교역액이 1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WTO 등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케냐 경제발전 전략(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케냐의 'Vision 2030'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경제성장 및 중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Big 4(① 제조업 활성화, ② 안정적 식량 공급, ③ 의료·보건 향상, ④ 서민 주택 보급) 아젠다(2018~2022)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아프리카 빗장 연다” 정부, 케냐와 무역·투자 확대방안 등 논의 - II

특히 박 차관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양국 간 무역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주의
초점

마이냐 장관은 이번 방한으로 양국 간 산업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커피 등 우수한 케냐 농산품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측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무역
NEWS

케냐는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지난해(-0.3%)를 제외하고, 2016~2019년 5~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4.5%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케냐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억 5,700만 달러(전년대비 31.8% 증가)로 전체 국가 중 91위를 기록했다.

개정
법령

지난해 기준 수출은 80위, 수입은 110위였으며, 對케냐 무역수지는 약 1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 I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최근 의료기기 품목의 다양성 증가 및 최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개발 등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으나, 의료기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한정된 수의 위원들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 수 확대 등을 통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두어 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품질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서 부실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법령

한편, 불법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이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 II

이주의
초점

지난 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비허가 스텐트를 정상 허가받은 완제품 포장박스에 넣어 의료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었음. 식품·의약품분야는 봉합한 완제품을 개봉하여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봉합의무·개봉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기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봉합 의무사항을 부여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점이 발각된 경우 그 허가 등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
법령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 III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6조의2).

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

라.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봉합 의무를 부과하고, 봉합한 의료기기는 개봉판매 할 수 없도록 함(제18조의2 및 제25조의5).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36조 등).

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사. 의료기기 부작용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함(제43조의6).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법제처

Cover

약사법 일부 개정- I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현행법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고 자료의 기준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하는 한편,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하여 신약 등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원
사례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약품 유통 문란과 제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된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약사법 일부 개정- II

이주의
초점

생물학적 제재 등은 제조·품질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나, 최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
법령

현재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결과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AIDS·암 등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심사·허가하는 제도가 하위 법령에 있는데, 이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건부 허가와 마찬가지로 우선심사 대상 지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신약 등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을 허가·심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법제처

Cover

약사법 일부 개정- III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 신설).

관세·무역
NEWS

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8조).

개정
법령

다.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함(제31조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함(제31조제16항).

민원
사례

마.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시험의 안정성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근거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제3항제5호 및 제34조의5 신설).

바.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증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5조의4).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약사법 일부 개정-Ⅳ

이주의
초점

사.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함(제42조제7항).

아.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함(제47조, 제47조의2, 제69조의4 및 제95조).

관세·무역
NEWS

자.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

차.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제59조의2,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 신설).

개정
법령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제76조 및 제93조).

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부과 사유로 추가하고, 과징금 상한을 해당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함(제81조의2).

민원
사례

파.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의약품의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88조의2 신설).

하.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90조의2 및 제90조의3 신설).

출처 - 법제처

기타
관세소식

Cover

미인도 물품의 신고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보세판매장 인도장에서 판매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가 필요한가요?

□ (답변)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 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해서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 취소 물품도 미인도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
NEWS

∴ 따라서 판매 취소 물품도 미인도 제품과 같이 미인도 물품 목록을 작성해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 후 보세운송신고 수리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 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

∴ 보세판매장으로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 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유·무상 물품의 수출신고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유·무상 물품을 혼재해 선적하는 경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란을 분리해 품명과 규격 등에 유·무상 물품임을 구분해 표시하기 바랍니다.

관세·무역
NEWS

∴ 신고가격은 FOB 기준의 원화가격으로 신고하되, FOB 기준이 아닌 경우 FOB 기준으로 산정해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

∴ 예를 들어 CIF 조건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결제금액은 실제 결제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유상금액만 기입하기 바랍니다.

∴ 기타 수출신고서 작성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

∴ 수출신고는 운송장 단위(B/L 등)로 신고하는 것으로 별도의 B/L이 있는 경우 무상 물품만 단독으로 선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탄소세 내라는 EU... '철강·알루미늄' 국내 기업 청구서는? - I

이주의
초점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세·무역
NEWS

15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철·철강 품목의 대(對)유럽 수출액은 15억2300만 달러(221만3680t)로 집계됐다. 2018년(24억8500만 달러·294만6121t), 2019년(21억2400만 달러·278만3801t)에 이어 수출 규모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유럽으로의 알루미늄 수출액은 1억8600만 달러(5만2658t)로 전년 대비 20.0% 늘었다. 이외에 비료, 시멘트, 전기 등 품목의 대유럽 수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
법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내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과세했을 경우 국내 기업은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원
사례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이 1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 생산은 0.25%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비금속 광물제품은 철강에 비해 대 EU 생산 및 수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뉴시스

Cover

탄소세 내라는 EU... '철강·알루미늄' 국내 기업 청구서는? - II

이주의
초점

KIEP는 "주요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면 수출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U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관세·무역
NEWS

KDB미래전략연구소도 얼마 전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력 수출 업종인 철강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명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추가될 관세 규모는 2023년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할 전망으로 철강 수출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법령

전국경제인연합회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뉴시스

Cover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 화물예약 데스크'서 中企 지원

이주의
초점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9일 해상·항공 수출 물류 종합지원 채널인 '회원사 화물 예약 데스크'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데스크는 최근 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물류애로 해소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SM상선, 대한항공 등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 및 항공화물 공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무역
NEWS

SM상선은 지난달 8일 무역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말까지 부산에서 미국 LA로 가는 컨테이너선 내에 중소기업 전용 화물공간 30TEU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도 지난달 21일 체결한 MOU를 통해 세계 7개 권역, 80여개 항만에 정기 출항하는 자사 벌크화물 선박의 유휴공간을 제공한다. 대한항공도 1일 맺은 MOU를 통해 연말까지 매주 2회 인천에서 LA로 가는 화물기에 편당 3t의 중소기업 전용 공간을 지원한다.

개정
법령

중소기업 전용 화물공간 지원은 곧 미주지역 및 동·서남아시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미주지역 수출 선복 확대를 위해 HMM과 협력해 장기운송계약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려해운과도 동·서남아 항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다.

민원
사례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이번 지원사업이 수출 물류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합심해 물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뉴시스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